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69호 (2012-50) 발행일 : 2012. 12. 21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다는 특징을 가짐

우리나라도 자녀 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동시에 용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이 여건 내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보육정책, 양육 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등이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 정책의 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러야 함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은 성장동력으로서 미래세대와 여성노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임



이삼식 연구위원

### 1. 배경

- 미래 한국사회는 장기간 축적된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으로 인하여 성장이 멈추고 개인의 삶의 질은 피폐해질 것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고령화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듯이 100여년 전에 프랑스 정치가들이 우려했던 '프랑스 문명의 몰락'이 우리의 미래사회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있다는 두려움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수년 내에 출산율이 실질적인 회복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기로에 있음

-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사례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여율(2009년 70.2%)과 출산율(2010년 1.94명) 모두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이삼식 외, 2009)<sup>1)</sup>

1) 이삼식 외(2009). 선진국의 인구문제 및 정책방향.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즉,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 · 가족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주된 저출산대책의 영역들로서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스웨덴 등 외국의 경험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보육 · 양육정책

### 가. 보육정책

-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 시설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

○ 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기본)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취업모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sup>2)</sup>

-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피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전 유아 학교), 개방 피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피르스콜라, 유아학급 등을 포함한 유아학교의 경우 전체의 75%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1〉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

	기관	이동아동 연령	특징
유아 학교	피르스콜라 (pre-school: foskola)	취학 전 아동 (만1~5세)	- 취업모를 위한 시설 - 연중무휴 종일보육서비스(부모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가능)
	개방 피르스콜라 (open preschool: uppen forskola)	취학 전 아동 (만1~5세)	- 전업주부를 위한 시설 - 시간제(정기적 등록 필요 없음) - 부모, 가정보육교사 등이 함께 방문하여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재 등 이용
	유아학급 (pre-school class)	취학 전 아동 (만6세)	- 취학 직전 유아를 위한 기관 - 보육 · 유아교육 통합에 따라 만1~5세 피르스콜라, 만6세 유아학급으로 구분
	가정보육시설	취학 전 아동 (만1~6세)	- 지자체의 아동보육사들이 가정보육 제공 - 특별한 이유로 소집단 양육이 필요하거나 인근에 유아학교가 없는 아동 등 대상
	여가활동센터	취학 후 아동 (만 7~12세)	- 연중무휴, 시간제 서비스 제공 - 학교교육 보충, 아동발달 지원

2) 1~12세 아동에 취학 전 활동과 (무상)보육서비스를 주 15시간 제공

〈표 2〉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유형

구분	시설중심 보육(center-based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학령전 학교(Pre-school)	
	0	1	2	3	4	5
호주	인가 받은 시설중심 및 가정 보육 시간제(주당 20시간) 또는 전일제(주당 최대 50시간)				예비학교: 초등학교와 연계(전일제 및 방과후보육 제공)	
핀란드	- 가정보육 - 지자체 운영 아동발달센터 *전일제: 주당 50시간 미만					
프랑스	- 시설중심: Crèche(전일제) - 가정보육: Assistant maternelles(전일제)			pre-school: École maternelle		
독일	시설중심 Crèche: Krippen			pre-school: Kindergarten		
이탈리아	- Crèche: Asili nidi *시간제(주당 20시간) *전일제(주당 50시간 이하)			pre-school: Scuola dell'infanzia		
일본	시설보육					
	가정보육				유치원	
한국	어린이집					
					유치원	
스페인	시설보육: Educación Preescolar			pre-school: Educación infantil(초등학교 연계)		
스웨덴	- pre-school: Forskola, 전일제(주당 30시간) - 가정보육: Familie daghem(대체로 지방에서 운영)					
영국	탁아소, 보모(childminders), playgroup			playgroup, 탁아소, 유아교육기관 (만 3~4세 아동은 주당 12.5의 무상 교육)		

주: 음영은 공공임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OECD(201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dicators,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내용을 축소 정리

- 스웨덴에서 영유아 보육 · 교육 시설 등록률은 2008년을 기준으로 영아 46.7%, 유아 91.1%로 높은 수준임

〈표 3〉 스웨덴 보육교육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단위: 개소, %)

구분	수(비율)		
	유아학교	가정보육	여가활동센터
시설	9,949(100.0)	-	4,299(100.0)
공립	7,447( 74.9)	-	3,748( 87.2)
사립	2,503( 25.2)	-	551( 12.8)
아동	432,621(100.0)	22,762(100.0)	346,130(100.0)
공립	355,616( 82.2)	18,743( 82.3)	314,776( 90.9)
사립	78,007( 18.0)	4,019( 17.7)	31,354( 9.1)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9), Children, pupil, and staff National Level, Report 331.  
http://www.skolverket.se/23894/publicerat

〈표 4〉 주요국의 6세 미만 아동의 보육 · 유아교육 기관 이용률(2008년)

구분	3세 미만	3세	4세	5세	3~5세
OECD 평균	31.4%	36.3%	57.5%	73.3%	55.7%
한국	37.7%	73.3%	79.3%	86.3%	79.8%
미국	31.4%	36.3%	57.5%	73.3%	55.7%
영국	40.8%	82.4%	97.3%	98.8%	92.7%
일본	28.3%	75.4%	95.7%	98.2%	90.0%
호주	29.0%	12.1%	52.6%	99.8%	54.6%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OECD(2011), Family Database (PF3.1.A), 자료 축소 편집

-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

〈표 5〉 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

(단위: 크로나)

구분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네 번째 자녀
만1~5세	1,260 (약 20만원) 또는 월 소득의 3%	840 (약 14만원) 또는 월 소득의 2%	420(약 6만 8천 원) 또는 월 소득의 1%	무료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서문희 외 2011 자료에서 인용 및 재편집

나. 양육지원정책

-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76달러(한화 약 24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 아동수당은 비과세이며 16세 이상이 될 경우 교육수당으로 변경되며 지원 방식은 동일

〈표 6〉 아동수당 및 대가족보충수당 지급 현황(2010년 기준)

아동수	월 아동수당	월 대가족 보충수당	월 총금액
1	1,050SEK (약 17만원)	-	1,050SEK (약 17만원)
2	2,100SEK (약 34만원)	150SEK (약 2.4만원)	2,250SEK (약 37만원)
3	3,150SEK (약 51만원)	604SEK (약 10만원)	3,754SEK (약 61만원)
4	4,200SEK (약 68만원)	1,614SEK (약 26만원)	5,814SEK (약 95만원)
5	5,250SEK (약 86만원)	2,864SEK (약 47만원)	8,114SEK (약 132만원)

○ 보편적 가족수당으로 매월 130SEK(약 19만원)를 현금으로 지원

- 가족규모가 큰 경우 국가보조 부가적 제공, 자녀가 있는 경우 매년 소득 이외에 약 2,400SEK(약 360만원, 월 25만원) 가족수당 제공

- 가정 총 소득이 하위층에 속하는 경우 5,570SEK(약 810만원, 월 67.5만원) 지원

-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약 49만원)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sup>3)</sup>

○ 배우자 중 한명은 일하고 있거나 학업 중이어야 함(지자체 선택 사항)

- 세제혜택으로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다. 일가정양립정책(육아휴직제도 중심)

■ 육아휴직제도

○ 스웨덴에서는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모가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함

– 휴직기간 중 부모는 모는 각각 60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부모 선택에 따라 나누어 이용이 가능

○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의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90일 동안은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父)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모(母)의 경우 전체 휴직기간의 82.8%, 부(父)의 경우 17.2%를 활용

〈표 7〉 주요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구분	적용대상자	육아휴직 청구요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형태	고용보장	소득보장
일본	민간부문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친부모, 양부모 포함	휴업개시일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자녀 출생일로부터 1세가 될 때까지	전일휴업	휴업신청 또는 휴업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무급
				시간단축근로 (시차출근제도, flex-time), 단시간 근무제도		
공공부문 <sup>1)</sup>				전일휴업		
				부분휴업		
미국 (가족 및 의료휴가법)	교사, 공무원, 남녀근로자 (친부모, 양부모, 위탁부모)	휴가개시전 12개월 동안 1,250시간 근로해야 함	12개월동안 총 12주간 부여함	전일휴가	휴가기간 동안 보건혜택을 유지함, 휴가만료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함	무급
			실질적인 휴가기간으로 계산하여 12주간 부여	분할휴가		
				시간단축근로		
스웨덴 (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보험법)	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등)	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거나,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	자녀가 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	전일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li> <li>· 휴가만료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li> <li>·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산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간 부모급여 지급함</li> <li>·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여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의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네를 부모급여로 지급함</li> <li>· 1/2일단축일 때는 2일간의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의 하루 분으로 계산한 부모급여를 지급함</li> </ul>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 통상 근로시간을 1/2, 1/4 단축함)		
독일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 부여에 관한 법)	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위탁부모)	자녀를 스스로 돌보며, 양육하고 있어야 함	친자녀는 3세가 될 때까지, 위탁자녀와 양자는 보호한 때부터 3년, 7세까지	전일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직기간중 해고할 수 없음</li> <li>· 휴가만료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li> <li>·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 근무연수에 산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취업자 또는 불안전취업자에 한하여 연방정부에서 자녀출생일부터 24개월간(생후 6개월까지는 600DM, 7개월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감액)지급</li> </ul>
				시간단축근로		

3)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표 7〉 계속

구분	적용대상자	육아휴직 청구요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형태	고용보장	소득보장
프랑스 (노동법전 사회보장법전)	남녀근로자(친부 모, 양부모, 견습 근로자, 임시고 용근로자 포함)	자녀출생일 또는 입양자녀의 가정 인도일에 적어도 과거 1년 동안 계 속 근무하여야 함	· 자녀가 3세가 될 기간동안 최고 원 칙적으로 1년 간 (최장 3년까지 2번 연장할 수 있음) · 입양일 때는 자녀 가 가정에 온 날부 터 3년 간	전일휴직	· 기업의 종업원으로서 의 지위 보유	무급원칙,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 장비(부담액은 해마다 다음에서 셋째자녀 부터 정액의 양육부모급여를 지급함
				시간단축근무 (1/5 이상 단축)		위 양육부모급여의 반액을 지급함
벨기에 (경제부흥법 직업중단으로 인한 수당지급 에 관한 훈령)	남녀근로자	동일기업에서 과 거 12개월 동안 근무하여야 함  전일근로자인거 나, 적어도 3/4 부분근로에 고용 되었어야 함	6~12개월간 부여함	전일휴직	· 고용계약은 수정됨	개월당 FB10,504 지급함
			6개월~5년간 부여함	반일휴직		개월당 FB5,252 지급함

주: 1)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3. 보육 · 양육정책 간 조합

- 이상 스웨덴의 보육 · 양육정책은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이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보육시설 미이용 1~3세 아동에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육 지원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 아동수당 지원(비과세),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가족보충수당 추가 지원, 16세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수당 지급 등

- 보육, 양육,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을 위한 예산은 현금지원(양육수당 또는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시설서비스 지원(부모를 통한 보육료, 시설보조금 등), 조세혜택 지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스웨덴의 보육 · 양육 · 일가정양립 지원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GDP대비 3.35%로 프랑스, 영국 다음으로 높음

- 한국의 경우 0.66%에 불과하여 스웨덴의 19.7% 수준, OECD(33개국) 평균(2.20%)의 30.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표 8〉 OECD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보육 · 양육지원 비율(2007년)

구분	보육양육비용 지원 유형			총계
	현금 지원	시설서비스 지원	조세혜택 지원	
프랑스	1.33%	1.66%	0.72%	3.71%
영국	2.13%	1.11%	0.33%	3.58%
스웨덴	1.49%	1.86%	-	3.35%
핀란드	1.48%	1.34%	-	2.83%
호주	1.80%	0.65%	0.36%	2.81%
독일	1.09%	0.75%	0.88%	2.71%
스페인	0.52%	0.71%	0.24%	1.47%
이탈리아	0.65%	0.75%	-	1.40%
일본	0.43%	0.36%	0.51%	1.30%
한국	0.02%	0.48%	0.17%	0.66%
OECD 33개국 평균	1.22%	0.78%	0.25%	2.20%

주: 동 내용은 보육 · 유아교육 관장부처 예산 뿐 아니라 조세혜택 등 다양한 지원내용이 포함된 자료임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OECD(2011), Family Database (PF3.1.A), 자료 축소 편집

- 스웨덴의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지출 수준(보육·유아교육 관장 부처의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은 GDP 대비 1.1%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음
  - 한국의 경우 0.4%로 스웨덴의 36.4%, OECD 평균(0.6%)의 66.7% 수준에 불과함
- OECD 등 외국과 비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보육·양육·일가정양립 지원 정도에 비해 보육비용 지원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9〉 OECD 회원국의 보육비용 및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2007년)

구분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
스웨덴	1.1 %
영국	1.1 %
프랑스	1.0 %
핀란드	0.9 %
이탈리아	0.6 %
스페인	0.5 %
독일	0.4 %
호주	0.4 %
한국	0.4 %
일본	0.3 %
OECD 평균	0.6 %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OECD(2011), Family Database (PF3.1.A), 자료 축소 편집

## 4. 시사점

- 이상 스웨덴에서는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정보육이 중요시 되는 시기에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와 가정양육수당이 강화되어 있으며, 시설보육이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어 있음. 가정보육이든 시설보육이든 보육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과정에서도 보육 이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동수당과 대가족보충수당을 지원 받음. 아동이 성장하여 고등교육이 중요시 되는 시기에는 교육수당이 지원됨
  - 지원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지원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음. 양육수당 또는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를 통한 보육료, 시설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됨
  - 이와 같은 정책적 발달은 현실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동시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음
    - 참고로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이들 정책 간 최적 조합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높이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독일, 스페인 등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들 간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출산율은 물론 여성경제활동참가율까지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도 자녀 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동시에 용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이 여건 내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
  - 맞벌이부부의 출산 시 생후 첫 1~2년간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필요함
    - 육아휴직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중요함
    - 아버지 할당제 등의 제도적 장치 수립과 함께, 아이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참여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양성평등한 양육문화 조성이 중요함
    -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계층이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 시간과 장소 등과 관계없이 희망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사각지대, 보육과 일(work) 간의 시간적 사각지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심리적 사각지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함
  - 영아나 부모의 상황 혹은 선호도에 따라 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통한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 양육이 가능하도록 스웨덴의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과 같은 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아일수록 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통한 개별 보육을 선호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양육수당이 우리사회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부모선택권 제고 필요
    - 이와 같이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경우 불필요하게 지나친 시설보육에의 집중을 방지하고 가정양육을 통한 자녀 성장(인격 형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보육의 접근성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되, 보육비용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필요
    - 현행 종일제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스웨덴과 같이 보육시간에 따라 차별화하고, 보육 이용 사유를 고려하여 지원
-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등이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 정책의 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러야 함
  - 이들 정책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성장동력으로서 미래세대와 여성노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임

집필자 | 이삼식(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 02-380-8226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